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2150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21503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19가단132575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주식회사 B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윤휘

변론종결 2022. 7. 21.

판결선고 2022. 9. 15.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19가단13257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E,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E, F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6. 21. 접수 제58575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윤영수, 판사 서동인

별지